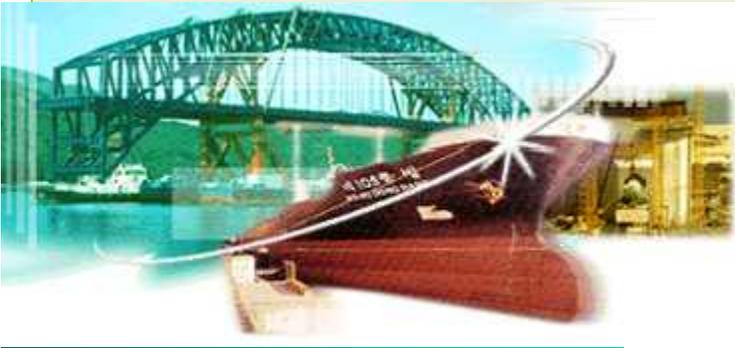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2절(제35조-제45조) 물품의 일치성 및 제3자의 청구권



원광대학교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2절(제35조-제45조) 물품의 일치성 및 제3자 청구권



■ 물품의 계약 적합성(제35조)

-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상품명세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가) 물품이 그 동일한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나) 물품이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물품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라) 물품이 그러한 물품에 대한 통상의 방법으로 또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물품의 계약 적합성(제35조)

이 조항은 물품은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비되어야 할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어긋나는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어 매수인은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상태를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그 책임에서 면제된다.

CISG에서는 물품 하자(瑕疵, defect, faul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 또는 물품부적합(lack of conformity)을 사용한다.

계약상의 합의

→ 물품의 적합성 여부는 1차적으로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당사자 간에 물품의 수량만 정하고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경우

→ 1) 물품은 통상적인 사용목적이 적합할 것(흔히 중등품질)

→ 2) 물품은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는데도 신뢰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없음

→ 3) 제시된 견본과 동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

→ 4) 통상의 방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 있을 것

→ 매수인이 부적합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객관적인 물품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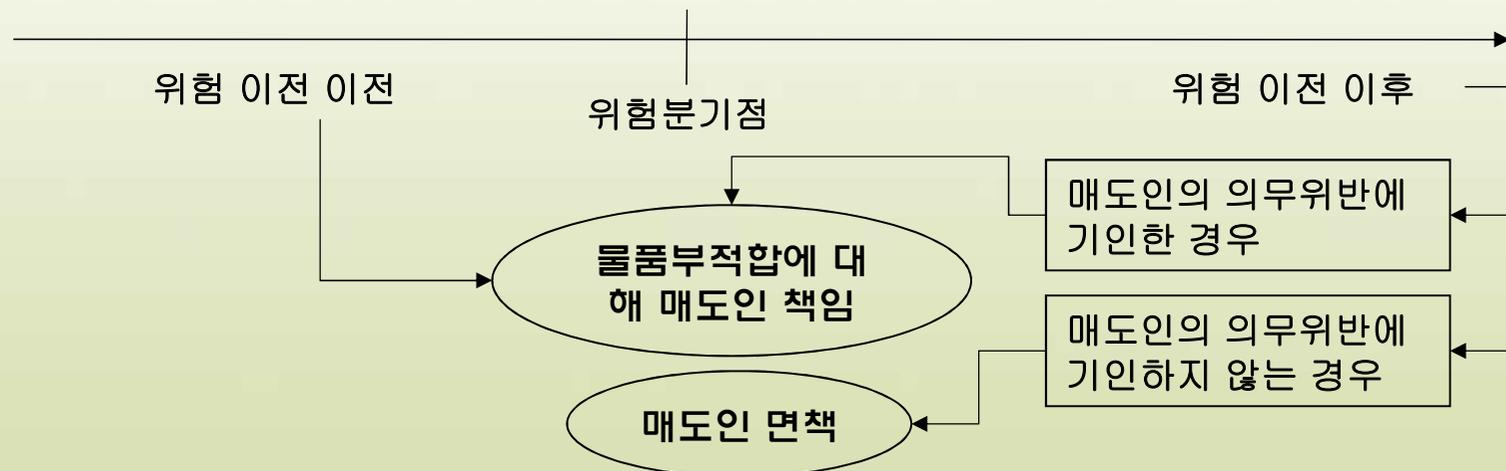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적합성의 결정시점(제36조)

-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 부적합이 위험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 (2) 매도인은 제1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의무위반에는 일정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조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그 부적합이 어느 시점에 존재해야 하는 가를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험이전 이전에 존재한 물품부적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물품부적합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험이전 후의 부적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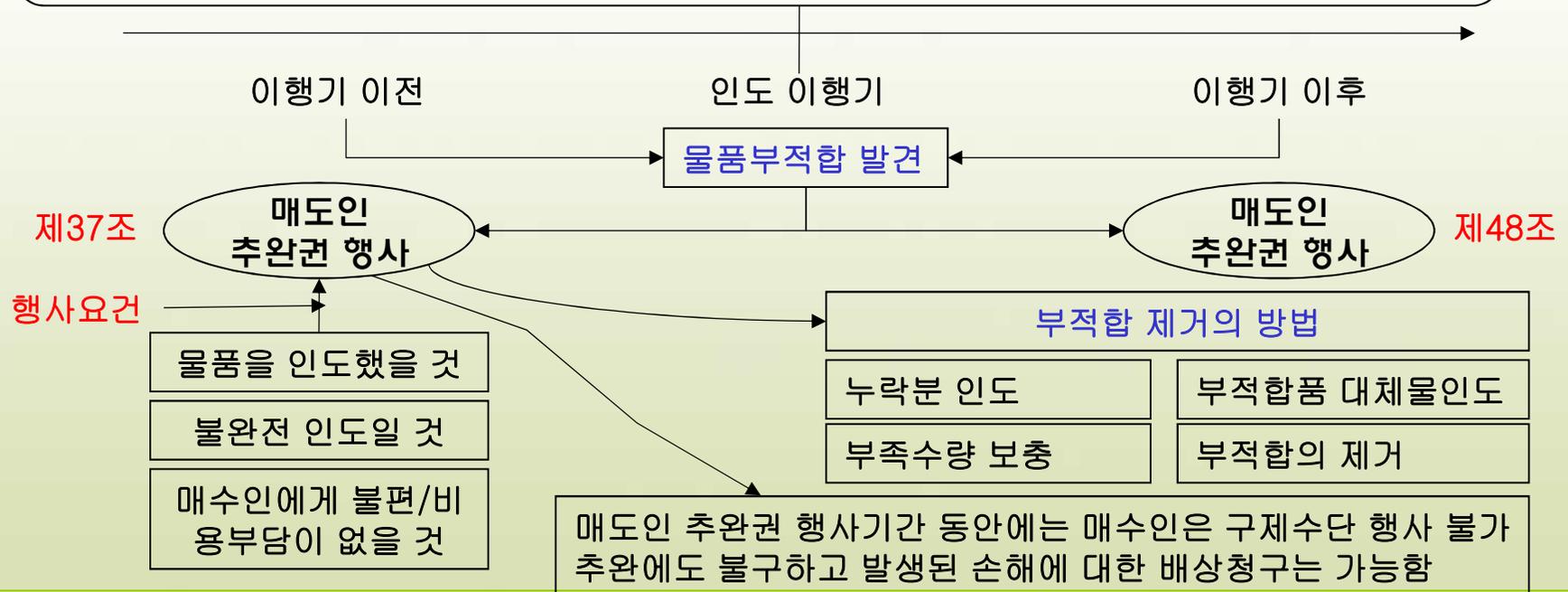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인도만기전의 추완권(제37조)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모든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

이 조항은 물품을 이행기 이전에 미리 인도하였으나, 그 인도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기까지 그 불완전을 치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행이 이전의 인도에 대해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매도인의 보완권 행사를 매수인이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행기 이후의 매도인의 추완권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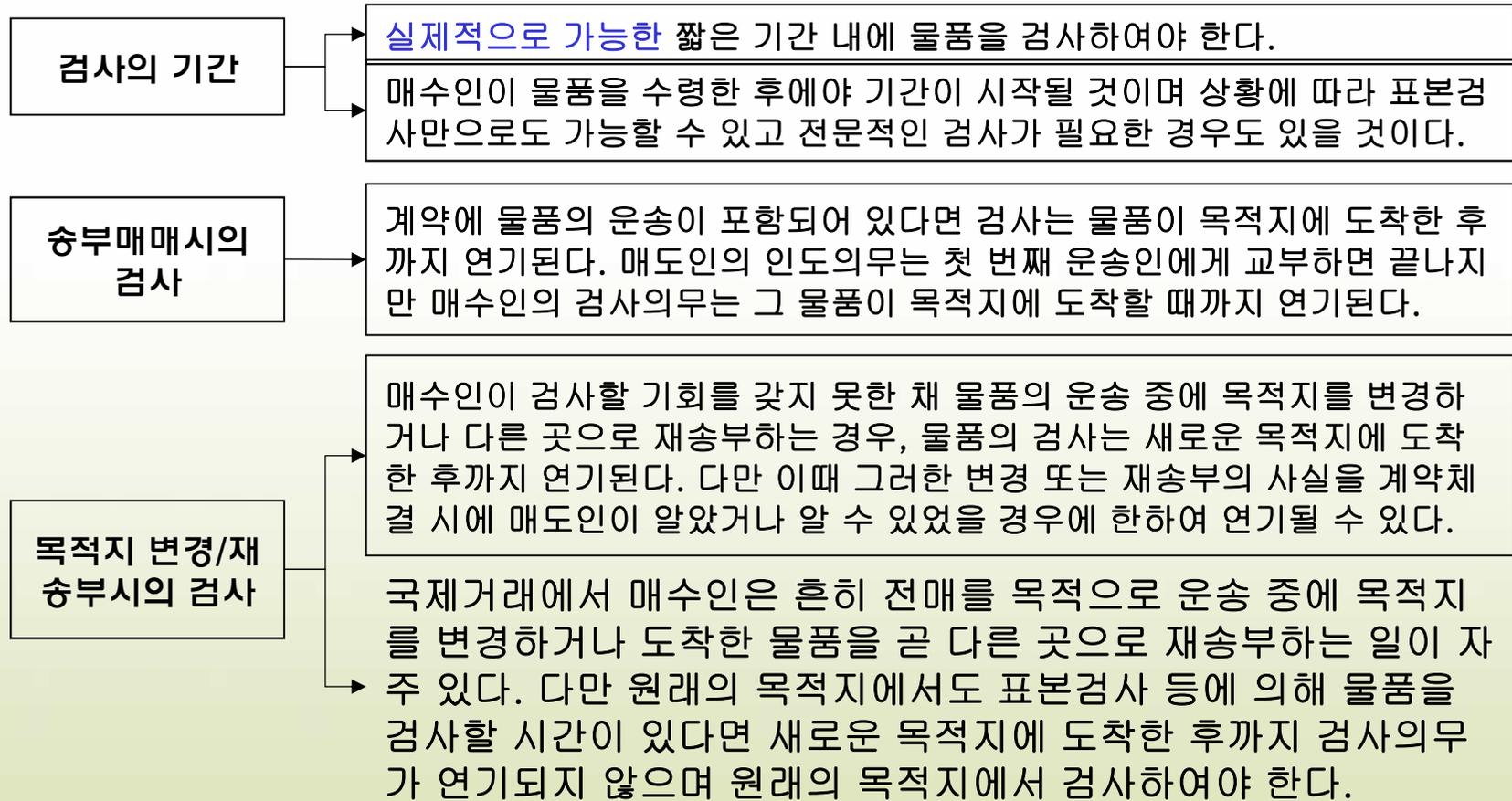


■ 물품의 검사기간(제38조)

- [1]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 [3] 물품이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매수인에 의해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轉送)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검사 의무는 독자적 의무가 아니라 제39조의 부적합 통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즉 매수인이 검사를 하였다면 발견하였을 부적합을 발견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부적합 통지를 제대로 하였다면 매수인의 검사 의무에 대해 매도인이 검사를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 규정은 검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검사 의무는 제58조의 매수인의 검사할 권리와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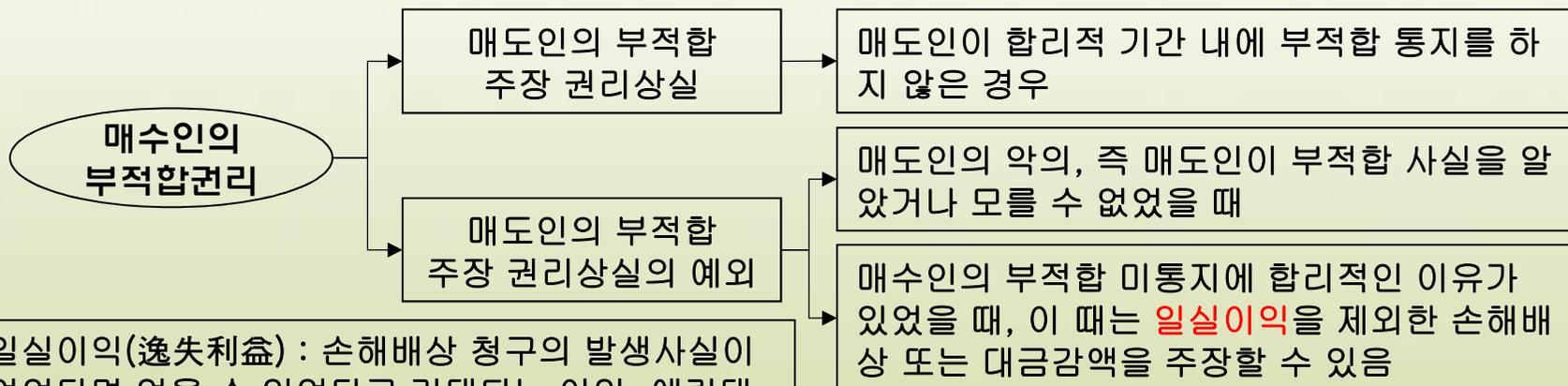
■ 물품의 검사기간(제38조)



■ 불일치의 통지시기(제39조)

-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 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매도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발견할 수 있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발견할 수 없는 부적합인 경우에도 2년 내에 부적합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은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그 기간은 합의에 의해 단축/연장이 가능하다.



일실이익(逸失利益) :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기대되는 이익, 예컨대 호프만식 계산법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2절 물품의 일치성 및 제3자의 청구권 10

제40조 매도인의 악의

■ 매도인의 악의(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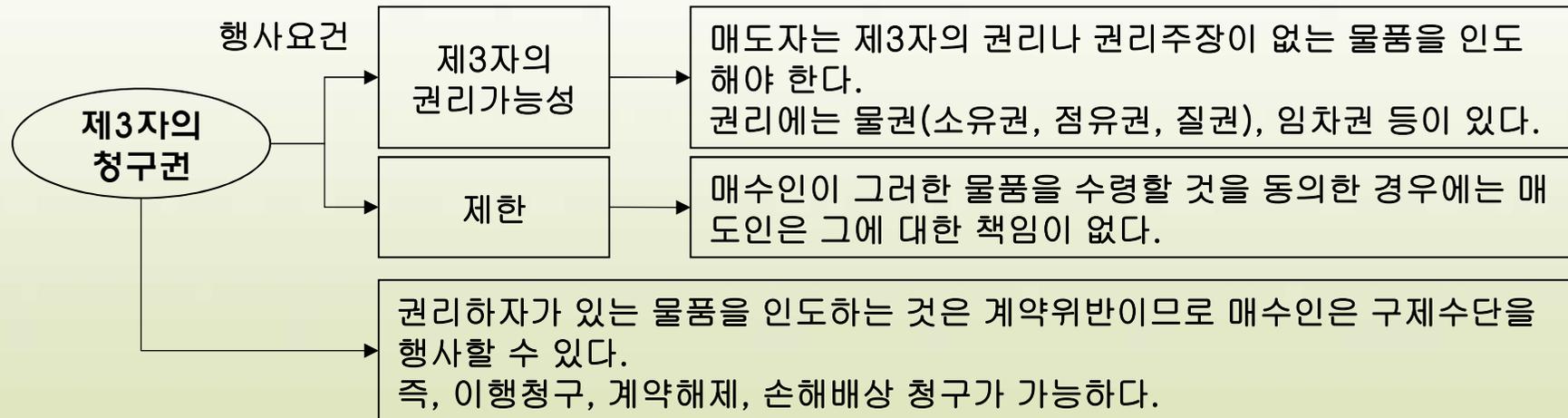
이 조항은 매수인의 검사 및 하지통지 의무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이 부적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제때에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매도인의 악의)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제3자의 청구권(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조항은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제3자의 지적소유권(제42조)

(1)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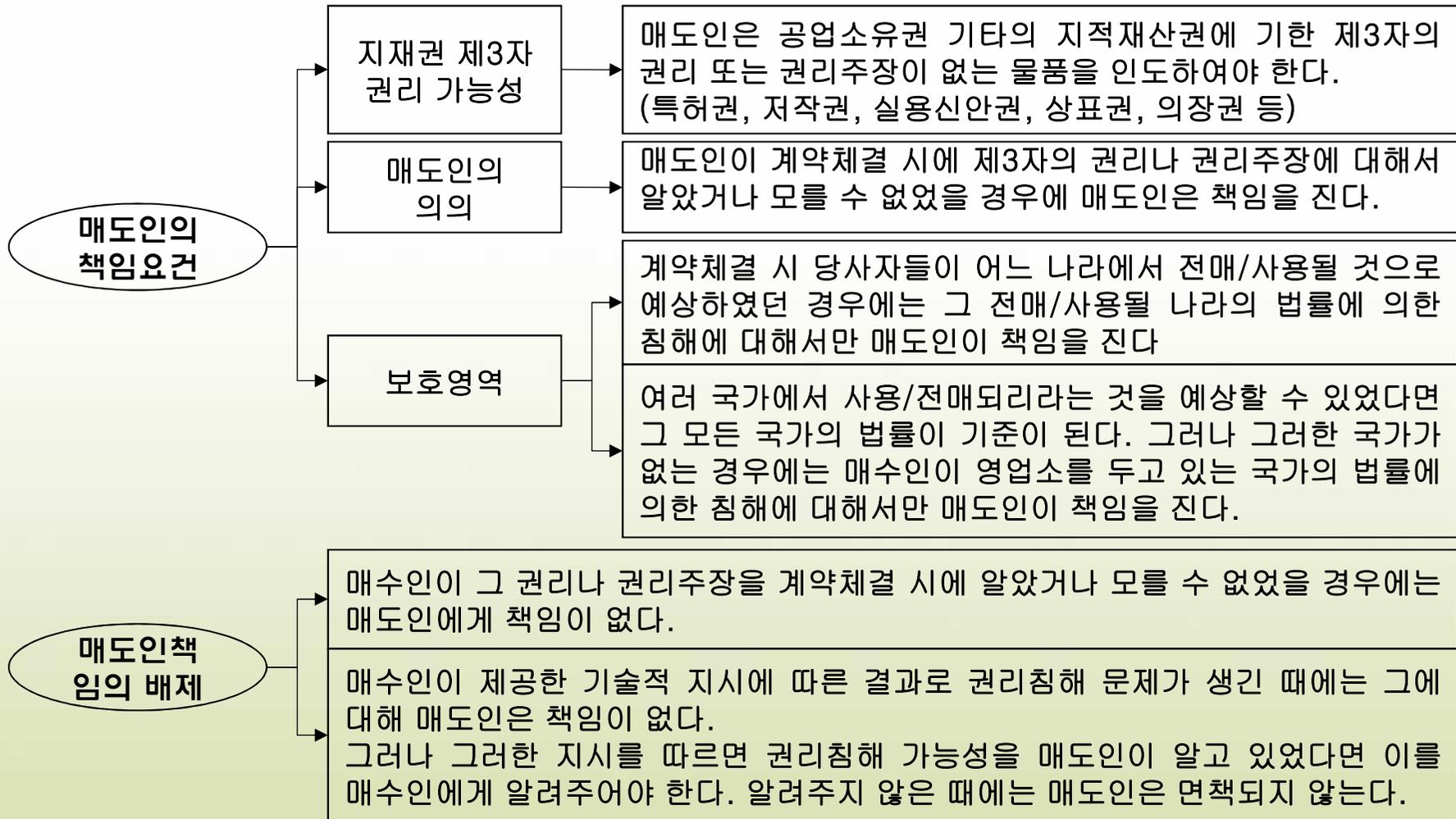
(가)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 설계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적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은 권리하자 중에서 그 권리가 지적재산권일 경우의 특칙으로 일반적 권리하자(제41조)에 비해 매도인의 책임을 완화시킨 규정이다. 즉,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그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되며, 또한 일정 국가에서의 침해 가능성에 한정된다. 다만 매수인이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 때는 매도인은 면책된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제3자의 지적소유권(제42조)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제3자 권리에 대한 통지(제43조)

-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물품의 권리자에게 대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하자통지
의무

매수인이 권리자를 알았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 하지 않았거나 늦게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하자통지
의무의
예외

매도인이 권리자와 그 성질을 이미 알고 있었던 때에는 매수인의 하자통지가 없었음을 원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권리자에게 기해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 통지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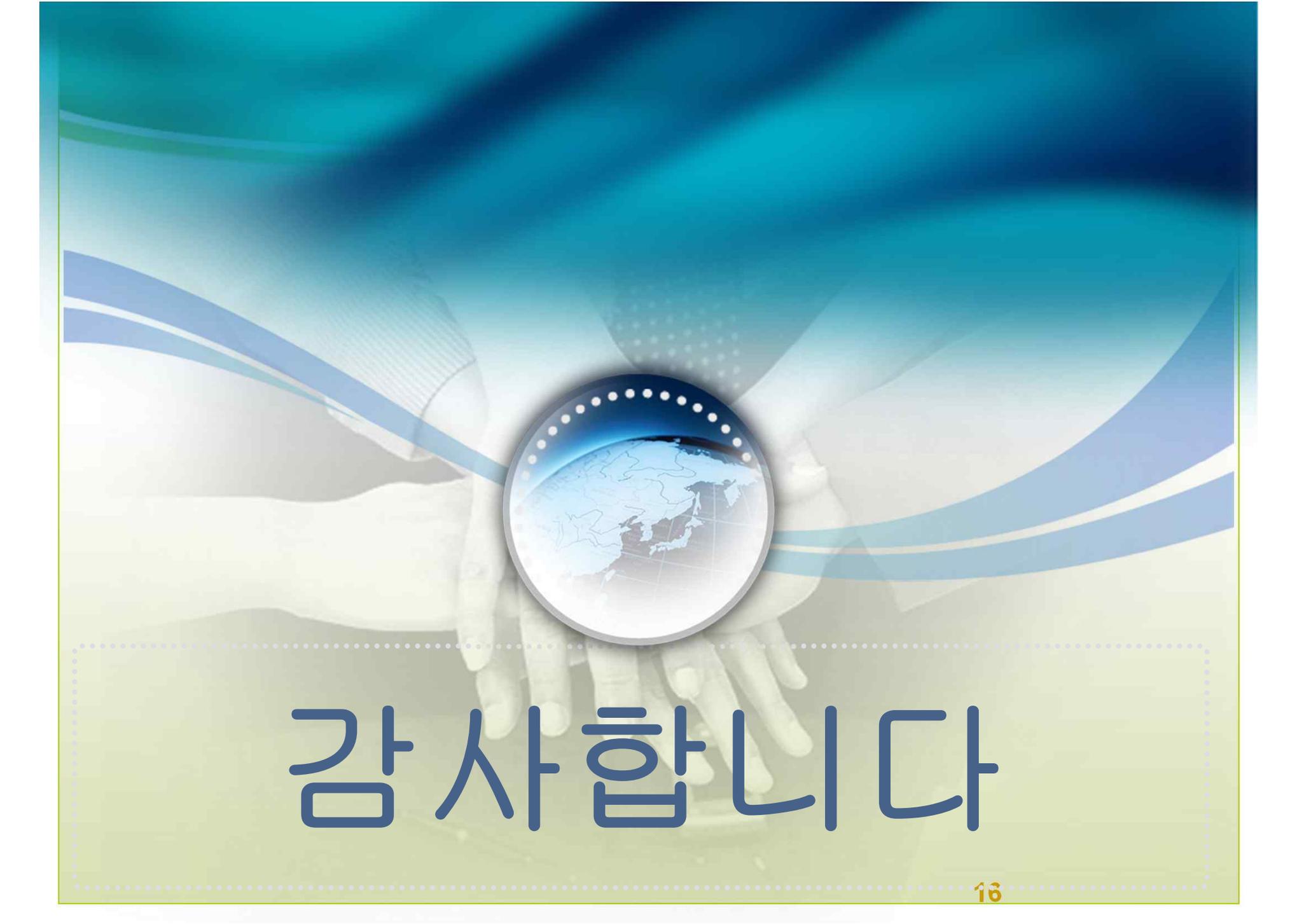
이 조항은 매수인이 하자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둔 예외규정이며, 물품 부적합과 권리하자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합리적
이유

매수인이 통지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효과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두 가지이다. 손해배상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식이익)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말함. 계약해제나 대체물 인도, 부적합 보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